

□ 제24차 중견관리자회의 개최 현황

- ◎ 일시 : 2012. 5.18.(금)
- ◎ 장소 :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관 509호
- ◎ 참석인원 : 33명
- ◎ 주요내용

-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개정

· 일부 대학의 법인화로 인해 회칙 제4조(회원의 자격)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임원회의 상정 및 총회에서 수정토록 함

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본 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도서관 등으로 본 회칙에 동의하는 도서관으로 한다.

개정안: ① 본 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의 도서관 및 국립대학법인인 대학의 도서관 등으로 본 회칙에 동의하는 도서관으로 한다.

- 가칭 “대학도서관진흥법(안)” 동법시행령 제정 입법 재추진

· 19대 국회 개원 즉시 대학도서관 3개 협의회 차원의 입법을 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 차원에 추진하도록 함

- 해외 선진대학도서관 연수 계획

· 2011년 우리협의회 단독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중단되었음

· 2012년에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주관의 3개 협의회와 공동추진

· 시행여부, 인원수, 지원액 등은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

- 대학도서관서비스 백서 판매 수익금 사용

· 해외 선진대학 연수 보조 등에 사용하되, 구체적인 방법(지원액, 지원방법)은 총회에서 결정 하도록 함

•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

- 사대도협과 협력사업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총회에 서 승인 후 추진
 - 해외 선진대학 연수, 회원교 인명록 교환 등

• 협의회 회비의 세분화

- 일부대학이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할 의사가 있으나,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회비 세분화를 요구
- 구체안(학생수, 대학규모에 따라 차등)을 만들어 총회에 건의토록 함

• 중견관리자 회칙 개정

- 제 3조(회원의 자격)
“본 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로서 5급 상당 이상으로 임용즉시 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이 부여된다”로 개정하기로 함
- 제 4조(회원의 자격상실)
2. “본 회의 회원 중 2회 이상 회비 미납 시에는 본인에게 탈퇴의사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한다”로 개정하기로 함

• 교육과학기술부 사서사무관 업무추진비 지원

- 지급금액: 50만원
- 재원: 중견관리자회 회비
- 지급시기: 2012. 5월부터
- 지급방법: 매월 통장으로 지급

• 중견관리자회의 개최교 지원금

- 협의회 지원금: 50만원
- 중견관리자회의 업체 특강료: 중견관리자회 수입으로 처리

• 기 타

- 대학도서관 서비스 백서 2판 발간 추진 검토
- 국대도협외 전문분과위원회 활성화 검토
- 중견관리자회 개최장소
 - 25차 회의장소(2013년 4월) : 목포대학교
 - 26차 회의장소(2014년 4월) : 제주대학교